

특정감사

감 사 보 고 서

- 정보공유 등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 실태 -

2019. 10.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업무 현황	4
III. 감사결과	8
1. 감사결과 총괄	8
2. 통보사항	
(1) 지방세정보시스템 과세 누락 방지 기능 미흡(통보)	11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관리를 위한 정보 연계·활용 미흡(통보)	24
(3)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확산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에 기여 [통보(모범사례)]	34
(4)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데이터의 공유 및 개방 미흡(통보)	48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관리 부적정(통보)	54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공공기관 등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대한 행정정보를 수집·생산·활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행정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국가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 유엔 전자정부평가 결과 온라인 참여부문에서 1위, 전자정부 발전부문에서 3위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품질이 확보된 행정정보의 구축·관리뿐만 아니라 그간 축적된 방대한 행정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야별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분석·활용함으로써 행정효율을 개선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IT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기존 데이터를 분석·활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 등이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하거나, 행정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기존 업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등으로 여전히 행정정보 공유·공동이용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방대한 행정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주요 감사대상으로 하여 행정정보의 공유 확대와 새로운 유형의 행정정보 분석·활용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충하거나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9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표 1]과 같이 그간 축적된 방대한 행정정보를 분석·활용하여 기존 행정업무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이에 필수적인 유관 행정정보 공유·공동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각 업무 담당자의 열람·조회 권한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표 1] 감사분야 및 감사중점

분야	감사중점
데이터기반 행정정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분야 관련 세수누락 방지를 위한 과세 자료 분석 및 유관 시스템 간 정보 공유의 적정성 ▪ 유가보조금 관련 폐업 또는 업종을 변경한 사업자(국세청) 정보 공유 및 부정수급 의심사례 적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의 적정성
행정정보 공유·공동이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부 및 각 지자체의 측정 결과 자료 공유·개방의 적정성 ▪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공공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의 적정성 및 모범사례 발굴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등·초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조회에 대한 권한 부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행정정보 공유·공동이용이 필요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각 지자체, 공공기관 등 43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수집된 460여 건의 행정정보 공유·공동이용 수요에 대해 기대 효과와 관련 법령 등을 검토·분석하였다.

또한, 감사원은 수요조사 검토·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여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실내공기질 정보, 지방세 분야 등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유·공동이용과 기존 데이터 분석·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사유를 도출하였고, 2019. 4. 15.부터 같은 해 5. 3.까지 15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원은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대상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2019. 5. 7. 각 기관에 질문서를 발부하였으며, 업무처리 경위·처리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감사원은 각 기관에서 답변서로 제출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9. 10. 4.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업무 현황1)

1.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 현황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 등이 그간 축적된 행정정보를 분석·활용하고, 그 결과를 민원 처리, 교통 사각지대 해소 등 실제 행정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표 2]와 같이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구축·보급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이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와 다른 행정기관, 민간 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분석함으로써 데이터기반의 정책 수립과 복잡한 사회현안 해결 등에 활용하고 있다.

[표 2]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내역

연번	구축연도	모델명	세부 내용
1	2016	민원 분석	▪ 민원 내용 및 처리 절차 분석
2		교통 분석	▪ 교통 사각지대 및 탄력 배차제 분석 등
3		관광 분석	▪ 지역 축제 효과 분석
4		CCTV 취약지역 분석	▪ CCTV 사각지대 및 우선 설치지역 분석
5		공동주택 관리비 분석	▪ 공동주택 관리비, 입찰, 하도급 부조리 분석
6		근로감독 효율화 분석	▪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의 우선순위 분석
7	2017	지방세 체납 분석	▪ 지방세 체납자 회수가능 등급 산출·분석
8		기부자원 분석 ①	▪ 기부자원(물적자원) 배분 최적화 모델 개발
9		기부자원 분석 ②	▪ 자원봉사(인적자원) 매칭 최적화 모델 개발
10		상수도 누수 분석	▪ 상수도 누수 현황 분석 및 누수 위험도 예측
11		응급환자 골든타임 ①	▪ 119 응급센터 사각지대 분석
12		응급환자 골든타임 ②	▪ 구급차 운영 최적화 방안 분석
13		일자리 매칭 분석	▪ 구직자 맞춤형 직무 및 일자리 추천 모델 분석·개발
14		도로관리 분석 ①	▪ GIS 기반의 포트홀 발생 위험지역 분석
15		도로관리 분석 ②	▪ 도로 파손 위험도 예측 및 재포장 우선구간 도출
16		도로관리 분석 ③	▪ 도로 안전시설 관리 우선지역 도출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도 행정효율 개선과 국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과 같이 기존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면서 데이터 융합·분석 등의 기능을 추가·보완하거나,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과 같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간 누적된 행정정보를 분석·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 행정정보 공유 및 공동이용 현황

정부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고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7월 「전자정부법」을 제정하였고, [표 3]과 같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범위, 공동이용 대상기관 및 공유 절차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등 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표 3]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

구분	주요 내용
공동이용 대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공동이용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이용 대상 기관이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신청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행정정보 보유 기관이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이를 승인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공동이용 승인 가능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일괄 승인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공동이용의 승인을 한 사무에 있어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그 명칭이나 소관부서 등이 변경되는 경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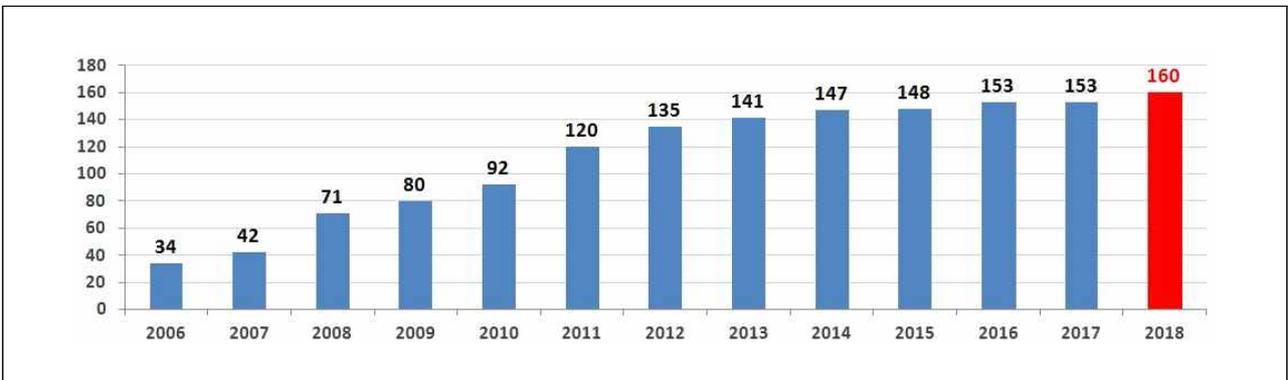
자료: 「전자정부법」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06년부터 민원신청 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민원 처리기관이 이를 전산망으로 확인·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공유)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를 통한 공동이용 대상 정보는 [도표]와 같이 2006년 34종(5개 기관)에서 2018년 160종(35개 기관)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활용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은 [표 4]와 같이 2019년 3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계 742개에 이르고 있다.

[도표] 공동이용 대상 정보 현황

(단위: 년, 종)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현황

(단위: 개)

계	중앙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 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 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수 법인	
742	64	243	166	38	72	73	40	46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3. 관련 법·규정 현황

행정정보의 공유·공동이용과 데이터기반 행정정보 분석 전반은 [표 5]와 같이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히, 행정안전

부는 행정정보의 분석·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신설과 ‘범정부 데이터통합 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²⁾하였다.

[표 5] 행정정보 공유공용이용 및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관련 법령체계

구분	법령 및 규정명
행정정보 공유공용이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공용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 「행정정보 공용이용 지침」
데이터기반 행정정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 2019년 6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중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표 6]과 같이 총 8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는 한편, 1건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해당 기관에 각각 처분요구 및 통보 하였다.

[표 6]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현황

(단위: 건, 억 원)

구분	합계			주의	통보	
	건수	금액	인원		일반	모범사례
계	9	98	-	-	8	1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데이터기반 행정정보 분석 분야

- 행정안전부는 2005년부터 각 지자체의 과세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 감사원은 그간 지방세 과세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기 위해 인허가 등 다른 업무시스템 자료와 대사하여 과세 누락 또는 과소 부과 등의 사례를 확인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
 - 한편 각 지자체 담당자는 소관 과세 기준자료가 방대하고 다른 지자체의 유사 과세내역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비교·검토를 통한 과세 누락 등 사전 예방이 어려운 실정
 - 감사원 감사기간 중 급배수시설(송수관, 지하수·하수도 시설) 등 동일 유형의 필수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어 전 지자체가 공통적인 과세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골프장을 대상으로
 - ① 인허가 자료와 대사(지하수·하수도 시설)하여 과세 누락분이 발견되거나, 다른 지자체의 과세사례(평균 송수관 길이 산출·비교) 대비 과소 부과한 내역을 파악·분석한 결과,
 - 139건(62개 지자체)에서 재산세 및 취득세 등 계 98억여 원이 과소 부과·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유사 과세내역을 자동 분석하여 과세 누락을 알려주는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이 필요하고
 - ② 또한 기존 감사원 감사사례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자료 연계 현황을 비교한 결과, 과세 누락 방지를 위해 서울행정정보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추가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의 유가보조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유가보조금 지급 업무를 총괄 관리·감독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르면 최초 유류구매카드 신청*(유가보조금 지급) 시 사업자등록증(국세청) 등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2009년 5월부터 유가보조금 수급 시,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전면 의무화

-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의 유효성을 확인할 때 국세청의 정보시스템과 미연계 등으로 검증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발급 이후 세무관서에 휴·폐업 신고를 한 화물차주의 경우에도 실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지 않은 채 기존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로 유가보조금을 계속 지급받을 개연성
- 감사원 감사기간 중 점검 결과, 최근 5년간(2014.1.1.~2018.12.31.) 발급된 유류구매카드 1,289,725개 중 7,218개가 발급 당시 이미 폐업 상태였는데도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 또한 최근 2년간(2017.1.1.~2018.12.31.)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과 휴·폐업 이력을 대사한 결과, 실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 휴·폐업 중인 화물차주 총 7,233명에게 계 38억여 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
- 아울러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과 실업급여 지급 내역을 대사한 결과, 휴·폐업 상태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279명이 유가보조금도 지급받아 실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높은 사례도 확인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정보(휴·폐업 정보)를 연계하여 유류구매카드 발급 시 사업자등록 유효성 검증을 강화하고, 유류구매카드 발급 이후 세법상 휴·폐업한 화물차주의 주유 내역을 분석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나. 행정정보 공유·공동이용 활성화 분야

-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에 따라 실내공기질 정보의 통합 관리와 대국민 개방을 위해 2008년부터 실내공기질 자료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
- 한편, 각 지자체 및 지방 공사·공단 등은 지하철 역사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실시간 측정결과를 취합·관리
- 최근 미세먼지 악화 등으로 실내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지자체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최대한 수집·공유하고, 정확한 결과를 국민에 개방할 필요
- 감사원 감사기간 중 점검 결과, 환경부는 지자체의 측정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 등이 설치한 계 190개의 측정기를 수집·공유 대상에서 누락, 정보 미개방
- 또한 현재 환경부가 개방 중인 지자체 측정결과 중에서도 서울, 광주 등 8개 측정기의 측정결과는 오류율이 약 10~48%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개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기반 행정정보 분석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업무의 정확성·효율성을 개선하고 향후 동일한 과세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골프장의 급배수시설과 같이 필수 시설물을 보유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과세 누락 분석 및 알림 기능을 마련하고, 기존 개별 지자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및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62개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계 139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등 과세 누락분을 부과·징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실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정보를 주기적으로 연계하여 유류구매카드 발급 시 사업자등록의 유효성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과 유류구매카드 발급 이후 세법상 휴·폐업한 화물차주의 주유 내역을 분석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행정정보 공유·공동이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환경부에 정확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국민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자료공개시스템의 정보 수집·공유 대상에서 누락된 각 지자체의 실내공기질 측정기 190개의 정보를 수집·공유하여 개방하는 한편, 각 지자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수집·공유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기능 등 시스템을 개선·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지방세정보시스템 과세 누락 방지 기능 미흡

소 관 기 관 행정안전부

조 치 기 관 행정안전부

내 용

1. 업무 개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1,143억 원을 들여 [표 1]과 같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종합부동산세시스템 등 5개의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위택스·스마트위택스를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사업비: 1,668억 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1] 지방세정보시스템 유형 및 용도

시스템명	용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16개 광역시·도, 201개 시·군·구 세무공무원이 이용하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시스템 (서울특별시 및 산하 25개 시·군·구는 별도의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활용)
위택스	대국민 지방세 신고납부 및 지방세 정보 연계를 위한 인터넷 포털 서비스
스마트위택스	대국민 지방세 신고납부 및 지방세 정보 연계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유관기관 간 지방세 과세자료를 상호 공유하는 통합시스템
종합부동산세시스템	재산세 부과정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는 시스템

자료: 행안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행안부는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등에 따라 [그림]과 같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새올행정정보시스템(건축물 대장 정보 등) 등 유관 정보시스템을 연계 하거나, 국세청, 대법원,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과세 관련 자료를 수집·종합하고 있다.

[그림] 지방세정보시스템 업무 구성도



자료: 행안부 제출자료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

방세정보시스템과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각 지자체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지역 내 과세자료를 검토·확인하고 있는데, 동일한 세목·업종별 과세자료라 하더라도 이상 데이터(과소 부과 또는 부과 누락)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접근할 권한이 없어 과세 항목의 적정성과 누락 여부를 비교·검토하기 어려운 등 과세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그간 감사원 감사결과 각 지자체가 지방세를 과소 부과하거나 부과를 누락한 내역³⁾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 유관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활용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행안부는 현행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구축 예정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기존 과세자료 중 이상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추출하여 각 지방세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구현하고, 감사원 감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유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해 과세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 누락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9. 4. 15.~5. 3.) 중 공통적으로 재산세 및 취득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 부과 대상⁴⁾ 시설물인 급배수시설(송수관, 지하수

3) 예를 들어 창원시 등 2개 지자체는 납세의무자가 원인자 부담금(세외수입정보시스템)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취득세 등 1.4억 원 부과 누락([표 3]의 과세 누락 사례 참고)

4)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은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식재된 잔디의 생육 및 관리를 위한 필수 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함[대법원 선고 2011두25142(2013. 9. 26.), 조세심판원 조심 2013지0517(2013. 7. 11.), 감사원 2014년 감심 제113호(2014. 4. 24.)]

시설, 하수도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을 검증대상으로 선정⁵⁾하고, 전국 130개 지자체(시군구) 관내 441개⁶⁾ 골프장을 대상으로 ① 송수관⁷⁾의 경우 골프장 간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하여 골프장 규모에 따른 평균 길이를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과세자료상 송수관의 길이가 과소하거나 누락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② 지하수 및 하수도 시설의 경우 재산세 등 과세자료와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의 골프장 지하수·하수도 시설 허가 내역 등을 비교하였다.

이에 따라 안산시 등 62개 지자체(시군구) 관내 139개 골프장의 과세자료에 [표 2]와 같이 송수관, 지하수 및 하수도 시설이 과소 계상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 등 각 지자체의 과세자료가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① 송수관의 경우 과세자료에 송수관이 아예 누락되어 있거나 송수관 길이가 평균 길이에 크게 미달⁸⁾하는 등 지난 5년⁹⁾간(2014~2018년) 각각 85건, 29건의 재산세 등이 부과 누락 또는 과소 부과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② 지하수 및 하수도 시설의 경우에는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지하수 시설과 하수도 시설에 대한 허가 내역 등이 있는데도 시스템 간 연계 미비로 인해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50건, 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골프장은 급배수시설(송수관, 지하수시설, 하수도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설치 시설물 항목이 정형화 되어 있어 이번 감사 시 검증대상으로 선정함

6) 골프장명은 동일하나 회원제·대중제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경우 1개로 산정함

7) 송수관 관련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은 없고, 체육시설업 신고 시 업체가 제출한 설계내역서, 도면, 준공내역서 등에 포함되어 있음

8) 과주시 등 3개 시 관내 골프장 25개를 표본으로 하여 필수 시설물인 송수관의 평균 길이를 산정한 결과 1홀당 약 1,500m로 18홀 기준 27,000m의 50%인 13,500m를 기준으로 검증함

9)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표 2] 골프장 시설물(급배수시설)에 대한 과세 누락 현황

(단위: 개)

구분	송수관 누락	송수관 길이 과소	지하수 시설 누락	하수도 시설 누락	합계 ^{*)}
골프장 수	85	29	50	79	139

주: 1개 골프장이 다수 항목에 해당할 수 있음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이에 대하여 감사기간 중 해당 62개 지자체로 하여금 과세를 누락하거나 과소 산정한 송수관, 지하수 시설, 하수도 시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¹⁰⁾하여 재산세 등¹¹⁾을 다시 산정하도록 한 결과, 다음 [사례]와 [별표] “재산세 등 과세 누락 골프장 명세”와 같이 62개 지자체 관내 139개 골프장에 대하여 계 9,856,930천 원의 재산세 등이 과소 부과되거나 부과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이상 데이터 알림 기능 및 유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활용 미비로 인해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가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 골프장에 재산세 등을 과소 부과한 사례

- 경기도 안산시 관내 ◀▶컨트리클럽(주식회사 △△)의 경우 송수관 71,173m, 하수도 배수공 95,532m 등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누락되어 5년간 계 794,920천 원의 재산세 미부과

이와 함께 기존 개별 지자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사례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유관 정보시스템 간 연계·활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표 3]과 같이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세외 수입정보시스템(각종 원인자부담금 납부 자료 등) 및 서울행정정보시스템(저유조 등 각종 인허가 자료)을 추가적으로 연계·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해당 지자체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각 골프장에 준공내역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확인함

11) 재산세 등 부과가 누락된 139개 골프장 중 1개 골프장(▽▽)만 취득세 과세 대상임

[표 3]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유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미흡 내역

감사원 감사결과 과세 누락 사례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남시 등 8개 지자체는 납세의무자가 원인자부담금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인정, 취득세 등 9.5억 원 부과 누락[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2018.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원인자부담금 납부정보 연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광역시 남구 등 5개 지자체는 납세의무자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인정, 취득세 등 0.7억 원 부과 누락[울산광역시 기관운영감사(2017. 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원시 등 2개 지자체는 납세의무자가 원인자부담금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미확인, 취득세 등 1.4억 원 부과 누락[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태(2014. 7.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 11개 지자체는 납세의무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미확인, 취득세 등 6.5억 원 부과 누락[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2018.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정보 연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익산시 등 14개 지자체는 전기사업자가 발전시설 공사 후 전·답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미확인, 취득세 1.6억 원 부과 누락[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2018.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울행정정보시스템의 전기사업자 허가자료 연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중구는 납세의무자가 저유조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미확인, 재산세 2.1억 원 부과 누락[인천광역시 강화군 기관운영감사(2015. 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울행정정보시스템의 저유조 설치 허가자료 연계 필요

그런데도 행안부는 2019년 4월 현재까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동일 업종의 시설물 내역을 자동으로 비교·분석하여 업무 담당자에게 이상 데이터(과소 부과 또는 부과 누락 등)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과 기존 감사사례에 따른 유관 정보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이상 데이터의 분석·알람 기능과 새울행정정보시스템 등 유관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미비로 인해 재산세 등의 과세가 지속적으로 누락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행정안전부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전국 200여 개 시군구가 새울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장 및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하수도 시설 인허가 및 신고정보를 지방세 과세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정보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연계·조회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 등에서 지적된 원인자부담금 납부정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정보, 저유조 설치 허가정보 등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저장·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골프장 관련 급배수시설 중 송수관과 같은 특정업종 필수 시설물 정보에 대하여 입력 누락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을 추가하는 등 향후 재산세 과세 누락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 등 [별표] 기재 62개 기관으로 하여금 누락된 재산세 및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①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업무의 정확성·효율성을 개선하고 향후 동일한 과세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골프장의 급배수시설과 같이 필수 시설물을 보유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과세 누락 분석 및 알림 기능을 마련하고, 기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참고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각종 원인자부담금 납부 자료 등) 및 새울행정정보시스템(저유조 등 각종 인허가 자료)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② 「지방세기본법」 제150조 및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 등 [별표] 기재 62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계 139개 골프장의 급배수시설(송

수관, 지하수·하수도 시설) 보유 현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검증하여 재산세 등
과세 누락분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재산세 등 과세 누락 골프장 명세

(단위: 원, m)

연번	시도	시군구	골프장명	과세 누락 여부 ¹⁾			기존 재산세 등 부과액 ²⁾	추징세액	기존 송수관 길이 ³⁾
				송수관	지하수	하수도			
1	강원도	-	-	○			1,320,892,340	8,979,070	
2	강원도	-	-			○	12,279,359,540	440,950	
3			-	○			298,091,710	405,590	
4			-	○	○	○	2,232,389,030	3,727,860	
5	경기도	-	-	△			588,190,420	575,210	2,730
6	경기도	-	-		○		11,172,033,170	19,608,170	
7			-		○		9,973,022,040	14,006,430	
8	경기도	-	-		○	○	1,729,629,280	3,454,780	
9			-		○	○	10,516,377,780	1,961,060	
10			-		○		9,624,355,750	13,431,870	
11			-		○	○	9,160,618,900	12,590,830	
12			-		○		617,763,610	681,230	
13	경기도	-	-			○	4,484,128,480	745,880	
14			-			○	347,110,840	127,590	
15	경기도	안산시	▼컨트리클럽	△		○	10,438,392,800	794,920,140	950
16	경기도	-	-			○	10,966,288,300	2,174,220	
17			-			○	7,025,916,210	4,981,270	
18	경기도	-	-		○		8,319,811,010	6,662,560	
19			-		○		10,684,669,030	557,020	
20	경기도	-	-	△			565,508,890	9,028,410	4,465
21	경기도	-	-	○	○		15,599,268,920	4,597,070	
22			-	△			9,387,881,210	47,431,200	7,466
23			-	△			11,650,738,140	128,732,090	1,700
24			-	△	○	○	309,212,010	8,044,580	3,221
25			-	△			341,357,950	8,077,390	3,221
26			-	△			7,507,461,050	37,309,420	5,000
27			-	△			16,684,688,140	54,492,420	7,450
28			-	○			○	571,273,180	6,364,240

연번	시도	시군구	골프장명	과세 누락 여부 ¹⁾			기존 재산세 등 부과액 ²⁾	추징세액	기존 송수관 길이 ³⁾
				송수관	지하수	하수도			
29	경기도	-	-	○		○	4,775,058,020	28,054,080	
30	경기도	-	-		○		1,657,823,950	11,828,650	
31			-		○		34,089,960	969,060	
32	경기도	-	-	△			253,579,350	10,019,550	8,941
33			-	△		○	18,046,470,040	515,462,470	5,130
34	경상남도	-	-		○		9,983,525,130	14,610,380	
35	경상남도	-	-	△		○	10,649,122,490	482,522,820	2,416
36	경상남도	-	-	○		○	1,269,840,810	74,626,560	
37			-	○			143,508,840	8,971,680	
38	경상남도	-	-	○			8,359,902,920	86,411,670	
39			-	○			12,190,919,770	146,460,570	
40			-	△			4,003,079,340	72,891,590	3,370
41			-	○			13,545,717,480	27,109,570	
42			-	○			6,597,230,280	159,295,690	
43	경상남도	-	-		○		5,490,128,250	2,969,620	
44	경상남도	-	-		○		6,056,257,820	3,532,210	
45			-	○			10,836,076,690	98,413,120	
46	경상북도	-	-	△		○	8,028,808,670	96,501,020	8,964
47	경상북도	-	-	○		○	269,565,520	12,466,260	
48	대구광역시	-	-	○	○	○	204,289,240	1,214,130	
49	대전광역시	-	-	○	○	○	777,726,540	6,913,710	
50			-	△		○	4,775,058,020	6,178,930	4,123
51	세종특별자치시		-	○		○	9,909,212,730	323,441,940	
52	세종특별자치시		-	○	○	○	365,861,750	76,075,890	
53	울산광역시	-	-	○			9,849,654,220	183,112,440	
54			-	○			315,434,310	10,472,000	
55			-	○			120,278,950	18,136,220	
56			-	△			10,045,483,470	27,770,330	5,665
57	전라남도	-	-	○		○	5,841,181,910	124,670,890	
58			-	○	○	○	149,701,590	11,993,300	
59	전라남도	-	-	○		○	134,544,700	13,735,000	

연번	시도	시군구	골프장명	과세 누락 여부 ¹⁾			기존 재산세 등 부과액 ²⁾	추징세액	기존 송수관 길이 ³⁾
				송수관	지하수	하수도			
60	전라남도	-	-	○	○	○	547,905,190	232,860,660	
61			-	○	○	○	395,284,530	370,433,780	
62			-	○	○	○	10,946,210	1,610,100	
63			-	○	○	○	10,889,900	4,711,920	
64	전라남도	-	-	○		○	3,955,004,410	197,532,230	
65			-	○		○	166,286,290	6,231,580	
66			-	○		○	8,098,970	6,406,720	
67	전라남도	-	-	○	○	○	1,383,893,320	38,451,650	
68			-	○	○	○	460,923,600	16,565,680	
69	전라남도	-	-	○	○	○	662,136,890	10,892,980	
70			-	○	○	○	81,944,050	4,262,740	
71	전라남도	-	-	○		○	141,279,010	14,553,120	
72			-	○		○	5,332,456,620	408,540,690	
73	전라남도	-	-	○	○	○	892,291,580	34,569,970	
74	전라남도	-	-	○	○	○	430,049,030	41,537,610	
75			-	○	○	○	179,068,540	9,641,890	
76	전라남도	-	-	○		○	44,903,840	44,105,290	
77	전라남도	-	-	○		○	2,706,602,510	170,796,590	
78			-	○		○	165,655,010	13,179,470	
79	전라남도	-	-	○		○	2,891,766,090	15,509,290	
80	전라남도	-	-	○			8,078,122,210	155,896,010	
81			-	○		○	6,273,666,540	207,540,220	
82			-	○			4,765,132,190	71,428,060	
83			-	○			266,785,530	8,297,450	
84	전라북도	-	-	○			441,648,950	6,947,640	
85			-	○			6,709,040	13,807,050	
86	전라북도	-	-	○		○	192,609,630	8,511,590	
87			-	○		○	413,991,740	27,199,090	
88			-	○	○	○	57,802,140	9,144,400	
89			-	○	○	○	153,541,550	9,411,350	
90	전라북도	-	-	○	○	○	542,363,430	43,086,190	
91			-	○	○	○	695,969,460	50,645,440	

연번	시도	시군구	골프장명	과세 누락 여부 ¹⁾			기존 재산세 등 부과액 ²⁾	추징세액	기존 송수관 길이 ³⁾	
				송수관	지하수	하수도				
92	전라북도	-	-	○		○	23,388,760	1,173,910		
93			-	○	○	○	61,456,760	7,483,850		
94	전라북도	-	-	○		○	204,849,380	6,806,490		
95	전라북도	-	-	○	○		4,325,201,000	120,281,500		
96			-	○	○		8,360,182,320	313,052,090		
97	전라북도	-	-	○			6,808,829,380	170,407,760		
98	전라북도	-	-	○		○	807,095,030	57,279,050		
99	충청남도	-	-	○		○	597,929,870	35,115,460		
100			-	○		○	136,143,840	3,147,180		
101			-			○	51,302,110	2,677,040		
102	충청남도	-	-	○	○	○	6,069,391,520	448,572,240		
103	충청남도	-	-	○	○	○	172,533,640	7,355,580		
104	충청남도	-	-	△		○	486,924,960	80,570,470	2,200	
105			-	○		○	446,227,990	25,191,620		
106	충청남도	-	-	○	○	○	886,799,770	21,837,900		
107	충청남도	-	-	○		○	3,945,129,020	114,609,580		
108	충청남도	-	-	○	○	○	5,978,374,160	66,737,800		
109	충청북도	-	-	○	○	○	124,904,580	390,676,230		
110	충청북도	-	-	△	○		6,384,432,620	224,664,660	1,525	
111			-	△	○	○	4,546,083,050	205,644,440	7,159	
112	충청북도	-	-	△		○	3,328,666,070	371,537,730	7,692	
113	충청북도	-	-	○	○	○	941,427,960	23,494,650		
114			-	○	○	○	748,303,860	24,282,190		
115	충청북도	-	-		○		74,206,150	123,370		
116			-	-		○		4,855,543,240	3,541,190	
117			-	△				8,813,717,370	81,472,300	13,437
118	충청북도	-	-	○			3,215,338,320	99,988,800		
119			-	△				7,274,589,040	173,294,700	2,536
120			-	△				898,769,840	19,912,300	2,733
121			-	△		○		5,938,331,130	230,830,490	1,180
122			-	△				4,790,958,560	22,496,660	2,250
123			-	△				4,236,499,950	58,619,620	2,661

연 번	시도	시군구	골프장명	과세 누락 여부 ¹⁾			기존 재산세 등 부과액 ²⁾	추징세액	기존 송수관 길이 ³⁾
				송수관	지하수	하수도			
124	제주특별 자치도	-	-	○			4,378,718,680	16,935,370	
125			-	△			5,201,232,170	6,784,180	7,305
126			-	△			1,095,595,400	5,587,730	5,400
127			-	△			4,710,786,220	28,846,100	6,057
128	제주특별 자치도	-	-	○			2,037,678,620	15,552,090	
129			-	○		○	6,136,576,350	18,708,070	
130			-	○			3,751,626,880	10,084,550	
131			-	○		○	2,352,123,290	17,434,820	
132			-	○		○	6,368,356,000	33,918,760	
133			-	○			1,073,369,040	32,362,180	
134			-	○			8,136,540,570	52,129,860	
135			-	○			1,746,148,350	26,616,940	
136			-	○		○	2,599,564,300	31,156,750	
137			-	○		○	1,657,823,950	4,874,230	
138			-	○			34,089,960	11,010,860	
139			-	○		○	253,579,350	26,801,160	
합계							538,498,630,870	9,856,930,850	

- 주: 1. '○'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가 누락, '△'는 기존 송수관 내역이 13,500m 이하로 일부 송수관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가 누락된 것을 의미
2. 최근 5년간(2014~2018년) 해당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종세 포함) 등 총 부과 금액
3. 당초 표준지방세시스템의 시설물 내역(시설물 코드 151)에 입력되어 있던 송수관 길이
4. 2019. 8. 23. 기준 자료

자료: 62개 지자체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관리를 위한 정보 연계·활용 미흡

소 관 기 관 국토교통부

조 치 기 관 국토교통부

내 용

1. 업무 개요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하 “화물차주”라 한다)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¹²⁾(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의 유가보조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별도의 보조금 신청절차 없이도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지자체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카드협약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도”를 2004년 3월 도입하였고, 이후 2009년 1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156호)을 개정하여 2009년 5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12)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함

이에 따라 화물차주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이력과 해당 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이력이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2017년 기준으로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지급된 유가보조금이 1조 7,674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표 1]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사용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유류구매액 ^{주)}	30,076	53,714	69,693	66,945	85,071	82,687	76,440	62,693	60,137	66,980
유가보조금액	5,352	12,298	14,740	12,219	15,716	16,026	15,745	16,307	17,130	17,674

주: 유류구매액에는 유가보조금액이 포함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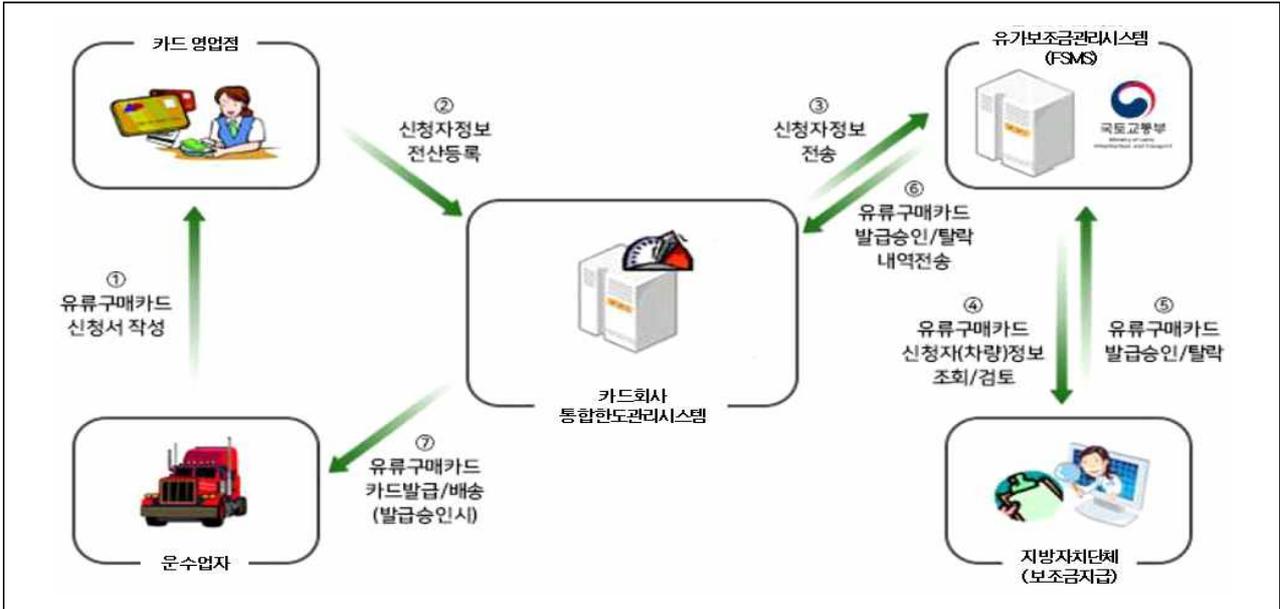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재구성

2.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정보 미연계 등 유가보조금 지급 관리 미흡

화물자동차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화물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7호, 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관리규정 제13조, 제17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최초 유류구매카드 발급신청 시 자동차 등록번호, 유종, 차종, 업종, 적재량, 관할 관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카드협약사는 이와 같은 정보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 및 관할관청(지자체)에 제공하고, 관할 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결과 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유류구매카드 발급 절차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종, 차종, 적재량 등에 대해서는 관련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등록된 유종과 다른 유종을 주유하거나 화물자동차의 톤급별 평균 주유량을 초과하여 주유하는 경우 등의 부정수급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실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여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하나인 데도, 국세청 정보시스템(사업자등록 관련 원시데이터 보유)과의 미연계 등으로 유류구매카드 발급 단계에서 사업자등록증의 유효성 확인 시 검증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세무관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휴·폐업(이하 “세법상 휴·폐업”이라 한다) 신고를 한 화물차주의 경우도 실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지 않은 채 기존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계속 지급받을 개연성¹³⁾이 있다.

13) 이와 함께 실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단순히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한 경우 또는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연계하여 유류구매카드 발급 시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유효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갱신되는 사업자등록 휴·폐업 자료와 비교하여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분석·확인함으로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감사기간 중인 2019년 5월 현재까지 유가보조금 지급 관리에 국세청의 세법상 사업자등록 휴·폐업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9. 4. 15.~5. 3.) 중 유류구매카드 발급신청 시 화물차주 등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의 유효성을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최근 5년간(2014. 1. 1.~2018. 12. 31.) 발급된 유류구매카드 1,289,725개 중 발급신청 당시에 이미 세법상 폐업 상태인데도 신규 또는 재발급¹⁴⁾된 카드가 각각 857개 및 6,361개로 카드 발급 단계에서부터 사업자등록의 유효성을 정확히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표 2] 세법상 폐업 후 발급된 유류구매카드(2014~2018년)

(단위: 개, %)

구분	전체 유류구매카드	사업자등록 폐업 후 발급된 유류구매카드		
		계 (비율)	신규발급	재발급
2014년	247,249	1,792 (0.72)	254	1,538
2015년	247,464	1,766 (0.71)	187	1,579
2016년	221,226	1,209 (0.55)	125	1,084
2017년	303,914	1,246 (0.41)	137	1,109
2018년	269,872	1,205 (0.45)	154	1,051
계	1,289,725	7,218 (0.56)	857	6,361

자료: 국토교통부,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14) 신규발급의 경우 화물차주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정보가 국세청의 폐업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이미 폐업한 사업자 등록번호일 여지가 있으며, 재발급의 경우 기존 유류구매카드를 갱신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서류제출 절차가 없음

15) 국세청의 정보시스템(홈택스)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개별 조회하는 등 수작업에 따른 오류로 추정

또한, 최근 2년간(2017. 1. 1.~2018. 12. 31.)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과 세법상 휴·폐업 이력을 대사한 결과, [표 3]과 같이 세법상 휴업 상태인 화물차주 1,037명에게 605백만 원, 폐업 상태인 화물차주 6,228명에게 3,223백만 원¹⁶⁾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실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 세법상 휴·폐업 사업자 총 7,233명에게 합계 3,828백만 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등의 부정수급 의심사례가 확인되었다.

[표 3] 세법상 휴·폐업 기간 중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2017~2018년)

(단위: 명, 원)

유형	지급내역	
	인원 ^{*)}	보조금
폐업	6,228	3,223,019,514
(180일 이상, 30회 이상)	1,313	2,599,949,217
휴업	1,037	605,933,939
계	7,233 ^{*)}	3,828,953,453

주: 휴업과 폐업 이력이 동시에 있는 사업자가 32명 존재하여 전체 합계는 7,233명

자료: 국토교통부,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위 7,233명에 대해 실제 화물운송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2년간(2017. 1. 1.~2018. 12. 31.) 세법상 휴·폐업 중인 화물차주가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내역과 실업급여¹⁷⁾(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에 지급) 지급 내역을 대사해 본 결과, [표 4]와 같이 세법상 휴·폐업 상태였던 화물차주 279명¹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기간 중에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중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16) 이 중 1,313명(2,599백만 원)은 폐업일 이후 180일 이상, 30회 이상 지속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임

17)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고용보험시스템 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에 국세청의 휴·폐업 정보를 연계하여 수급자가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부정수급 의심자로 등재하고 있음

18) 세법상 휴·폐업 사업자인데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매우 높고 행정기관에서 사실조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환수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표 4]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화물차주(2017~2018년)

(단위: 명, 회, 원)

인원	횟수	금액
279	4,754	66,362,900

자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휴·폐업 정보를 연계하지 않고 있어, 세법상 휴·폐업 신고를 한 이후 실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부정수급에 대한 의심사례를 분석·확인할 수 없는 등 이와 관련된 부정수급 방지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3. 복수로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미흡

국토교통부는 2009년 5월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이후 카드의 선택폭 확대와 서비스 혜택 제고를 위해 2009년 12월 유류구매카드를 복수의 카드사업자를 통해 발급하기로 하였으며, 2019년 5월 현재 화물차주는 카드협약사[(주)◇◇카드, ♥♥카드(주), ♠♠카드(주), (주)♣♣카드, ☆☆카드(주)]별로 각각 한 장의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 차량 1대당 총 5장의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화물차주가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화물자동차 외에 화물차주가 소유한 다른 차량에 대한 주유거래 등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유류구매카드가 사용될 염려가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표 5]와 같이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5가지 유형의 부정수급 의심거래 패턴을 추출하여 각 지자체로 통보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화물차주 본인이 시인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지자체에서 부정수급으로 확정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표 5] 기존 부정수급 의심거래로 추출되는 5가지 유형

연번	유형	설명
1	주유패턴 이상	▪ 월별 지급한도량 소진율의 95~105%인 차량 중 100만원 이상 단일 거래한 실적이 월말(21일~말일)에 있는 차량
2	단시간 반복 주유	▪ 1시간당 3회 이상 주유한 차량
3	1일 4회 이상 주유	▪ 1일 거래 건수가 4회 이상인 차량
4	탱크용량 초과 주유	▪ 1회 주유량이 톤급별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차량
5	톤급별 평균 대비 초과 주유	▪ 동일 톤급의 1회 평균 주유금액보다 10배 초과하여 주유한 차량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달리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되는 주유이력 정보(차량번호, 카드번호, 승인일시, 주유소 주소 등)를 분석·활용하면 동일 차량에 대해 연속적으로 승인된 주유거래 중 주유소 간 거리와 시간 간격을 고려했을 때 화물자동차의 물리적인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주유거래를 추출해낼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보유 중인 주유이력 정보를 분석·활용하여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한 화물차주에 의한 부정수급 의심 거래 내역을 추출·제공하여 각 지자체로 하여금 이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 중 인천광역시 관내 최근 4개월간(2019. 1. 1.~ 4. 30.)의 주유이력을 표본으로 하여 사실상 물리적인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¹⁹⁾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유류구매카드 승인 내역을 [표 6]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 본 결과, [표 7]과 같이 8대의 차량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주유소 간 이동거리와 주유시각의 차이로 계산하였을 때 150km/h 이상의 평균 속력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승인된 주유거래를 추출

[표 6] 물리적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리에서의 연속 주유거래 추출과정

연번	단계	세부내용
1	표본대상 선정	▪ 인천광역시 내 2019년 1~4월 중 주유한 이력이 있는 차량 선정(21,606대)
2	연속 주유거래 추출	▪ 동일 차량이 2시간 이내에 연속적으로 주유한 이력이 있는 차량 추출(704대)
3	이동거리 계산	▪ 연속 주유거래 2건에 각각 포함된 주유소의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두 주유소를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거리(km)를 계산(T-MAP 활용)
4	필요 속력 계산	▪ 연속 주유거래 2건에 각각 포함된 주유시각 정보를 활용하여 주유거래 간 소요시간을 계산하고, 이동거리를 소요시간으로 나누어 필요 속력을 계산
5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거래 추출	▪ 필요 속력이 150km/h 이상인 연속 주유거래를 추출(8대)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재구성

[표 7] 물리적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리에서의 연속 주유거래 추출결과

(단위: km, 분, km/h)

연번	차량번호	카드번호 (뒤 3자리)	승인시각	주유소 주소	주유소 간 거리	주유 시간간격	필요 이동속력
1	인천 ●●	*845	11:02:13	-	148	2	4,450.6
		*248	11:05:07	-			
2	인천 ■■	*070	16:02:00	-	53	1	3,167.9
		*806	16:03:47	-			
3	인천 ▲▲	*636	17:20:39	-	146	32	274.4
		*097	17:52:49	-			
4	인천 ▶▶	*794	18:51:35	-	398	89	268.3
		*508	20:21:05	-			
5	인천 ▼▼	*299	16:07:24	-	135	31	261.4
		*209	16:38:19	-			
6	인천 ○○	*912	15:04:16	-	8	2	233.3
		*387	15:07:12	-			
7	인천 □□	*960	17:58:16	-	33	13	154.0
		*366	18:10:58	-			
8	인천 ◆◆	*641	19:33:06	-	70	28	150.3
		*372	20:01:11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 유류구매카드의 승인시각과 주유소 간 거리 등의 자료를 비교·분석한 바와 같이 화물차주가 동일 차량에 대해 다수의 유류구매

카드를 사용하여 사실상 화물자동차의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주유 패턴을 향후 부정수급 의심거래 유형에 추가하면 부정수급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등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국토교통부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국세청 정보시스템과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연계하여 세법상 휴·폐업 상태인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유가보조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지급받은 279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연속으로 주유하는 사례를 분석·추출하여 부정수급 의심거래 유형에 추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 ① 실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정보를 주기적으로 연계하여 유류구매카드 발급 시 사업자등록의 유효성 검증을 강화하고, 유류구매카드 발급 이후 세법상 휴·폐업한 화물차주의 주유 내역을 분석하도록 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 ② 유가보조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한 것으로 확인된 279명에 대해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한 화물차주가 사실상 물리적인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하는 경우를 분석·추출하여 향후 부정수급 의심거래 조사 유형에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통보(모범사례)

제 목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확산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에 기여
소 관 기 관	행정안전부
조 치 기 관	행정안전부
모 범 부 서	정부혁신조직실 행정정보공유과
모 범 내 용	

위 부서는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2006년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민원 신청 시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 대신 구비서류를 확인·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정보 조회서비스²⁰⁾를 제공하고, 신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발굴하는 등 범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부서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여 [별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 현황” 및 [별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 현황”과 같이 2019년 3월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계 166종의 행정정보가 총 742개 기관에서 공동이용 대상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 조회서비스와 같은 기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방식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20)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이나 보유기관에서 제출받지 않더라도 담당 공무원 등이 해당 행정정보를 전산망으로 조회·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

경우에만²¹⁾ 담당 공무원 등이 개인정보를 조회·확인할 수 있고, 공동이용 대상 업무가 민원사무 등에 국한되어 있는 등 활용범위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위 부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기반²²⁾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²³⁾(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축·마련하고, 그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사각지대였던 문화·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정 감면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위 서비스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1.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에 기여

위 부서는 2016년 1월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자격정보를 공동이용하여 체육시설 수강료를 온라인으로 감면하는 데 활용하고 싶다는 내용을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 부서는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등이 운영 중인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주차시설 등 공공시설 전반에 걸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결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온라인상으로는 법정 할인대상

21)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거나 개별 법령 등에 구체적인 활용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2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가능

23)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2017년 구축 당시에는 서비스명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였으나, 2019년 부터 자격 종수 및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로 서비스명이 변경됨

자의 자격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다음 [사례 1]과 같이 정상요금을 결제한 후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고, 일부 감면대상자는 증빙서류를 대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부담감과 이에 따른 낙인효과 등을 우려하여 감면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례 1]

< 기존 법정 감면대상자의 이용요금 감면 유형 >

1.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결제는 가능하나, 감면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선 온라인상에서 정상요금으로 결제하고, 향후 현장을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차액을 환불
2. 법정 감면대상자는 온라인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현장에 증빙서류를 지참한 채 방문하여야 요금감면 및 결제 가능
3.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감면대상임을 선택하면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나, 추후 현장을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공공시설 이용 가능

그러나 대다수의 공공시설 홈페이지는 지방 공사·공단 등이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공공시설 예약·신청은 별도의 근거 법령이 없거나 민원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등으로 이용요금 감면 등에 필수적인 정보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국가유공자 여부, 장애인 여부 등의 법정 감면자격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위 부서는 지속적인 부서 내 아이디어 회의와 기술 검토 등을 통해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법정 감면자격 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예약·신청 홈페이지 이용 시 [그림]과 같이 이용자 본인이 직접 감면자격 정보를 조회한 후 해당 정보를 공공시설 홈페이지에 제공·동의하도록 하는 개인 정보 제공·동의 기반의 서비스 구축방안을 수립하였다.

[그림]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적용 사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이를 위해 위 부서는 문화·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공공시설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범용²⁴⁾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하고,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2017년 4월 발주 예정이던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 고도화사업”²⁵⁾에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 내용을 추가·반영함으로써 신속하게 서비스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위 부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요건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등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요건을 전수 분석·검토하는 한편,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방식과는 달리²⁶⁾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기반으로 감면자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표]와 같이 보건복지부 등 10개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관련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으로 협의함으로써 2018년까지 계 28종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24) 법정 감면대상자 여부(Y/N) 정보만을 제공하는 표준 연계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개발

25) 계약기간: 2017. 5. 23.~12. 19., 계약금액: 42.3억 원

26)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개별 법령 등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보유기관에 이용승인을 요청함

[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 내역

(단위: 종)

구축연도	행정정보 보유기관	행정정보명(자격명)	종수
2017년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여부	1
	국세청	▶ 모범납세자 여부	1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Y/N),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장애인 등급 정보,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여부, 차상위 수혜자 여부,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여부	6
	교육부	▶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1
	국토교통부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자동차 제원 및 등록지	2
	행정안전부	▶ 18세 이하 자녀 수, 70세 이상 부모 여부, 거주지 행정코드(관내 주민) 여부, 막내자녀 나이, 전체 자녀 수	5
	여성가족부	▶ 한부모 가정 여부	1
2018년	법무부	▶ 외국인 거소사실 여부	1
	병무청	▶ 병역 명문가 여부	1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자(봉사시간) 정보, 다자녀 정보(자녀 수, 생년월일), 65세 이상 노부모 생년월일	3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차량 여부	1
	보건복지부	▶ 장애인 차량 여부,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 여부, 차상위 장애연금 수급 여부	3
	한국환경관리공단	▶ 친환경 차량 여부	1
	국토교통부	▶ 자동차 제원(경차 여부)	1
합계			28

자료: 행안부 제출자료

2.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적용 확대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

문화·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공공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에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감면자격 정보를 반영하여 온라인상에서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할 수 있도록 기존 홈페이지의 기능을 일부 개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용 승인은 보안수준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적정성 심사를 거쳐야 하고, 기존 홈페이지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 등에 이를 반영²⁷⁾하여야 하는데, 각 기관 담당자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

27)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웹페이지 방식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이 있는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500만 원, 2,000만 원의 시스템 기능개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행정안전부 비용산정 기준)

스를 알지 못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적용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위 서비스를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위 부서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4월 현재까지 7차례²⁸⁾에 걸쳐 수요 조사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음 [사례 2]와 같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적용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례 2]

-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2017. 7. 18.부터 체육시설 예약·신청 서비스에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적용하여 2018. 12. 31.까지 장애인 4,354건, 국가유공자 1,147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574건, 한부모가족 1,086건 등 계 7,161건의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온라인으로 즉시 감면하는 등 증빙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
-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주차장에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적용하여 2018. 10. 23.부터 2019. 1. 7.까지 약 2.5개월 동안 경차, 장애인 차량, 친환경 차량 등 112,476건의 주차요금을 자동 감면함으로써 매번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차량 혼잡을 개선하고, 경차 등 차종 판별기 미설치로 약 4.5억 원의 예산을 절감

그리고 위 수요조사 등에 따라 2017년 5월까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9개 기관²⁹⁾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고, 2017. 9. 19.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등 9개 기관³⁰⁾과 2018. 11. 21.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등 7개 기관³¹⁾과 별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한편, 2019년에는 지역별 재정여건 차이에 따른 서비스 적용 지연 등을 해소·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³²⁾하는 등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다.

28)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설명회(2017. 4. 21., 2018. 2. 9., 2018. 4. 12., 2018. 7. 26., 2019. 4. 16. 계 5회),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적용 수요조사(2018. 1. 24., 2018. 8. 22. 계 2회) 등 총 7회에 걸쳐 설명회 및 수요조사 등 실시

29)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등 계 9개 기관

30)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등 계 9개 기관

31) 인천국제공항공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부천시,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계 7개 기관

32)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적용을 포함한 시스템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편성하여 공모사업을 진행함

이에 따라 2019년 4월 현재까지 [별표 3]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적용기관 및 활용 실적”과 같이 성동구시설관리공단 등 계 18개 기관의 문화·체육시설, 주차시설 등에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가 적용됨에 따라 총 563,218건이 활용되었으며, 이를 증빙서류 발급에 따른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약 29억여 원³³⁾으로 같은 금액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위 부서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조치 사항 위 부서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의 구축 및 적용 확대로 국민 불편 해소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원장의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통보(모범사례)]

33) 5,172원[구비서류 1건당 발급 평균비용(미래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BPR/ISP) 완료보고서, 행정안전부)]×563,218건(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활용 건수)으로 산정함

[별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 현황

(단위: 종)

연번	보유기관	공동이용 행정정보	종수
1	교육부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4
3	외교부	▶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3
4	법무부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	4
5	행정안전부	▶ 국외이주신고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훈수여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전입세대,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10
6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증명서, 축산업등록증	2
7	산업통상자원부	▶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8
8	보건복지부	▶ 건강진단결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약사면허증, 어린이집인가증, 영양사면허증,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 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전문의자격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15
9	환경부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 최종, 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6
10	고용노동부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1
11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1
12	국토교통부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위반건축물관리대장,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야도,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지적도, 착공신고필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지적전산자료	34
13	해양수산부	▶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선박원부, 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8
14	해양경찰청	▶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총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	4

연번	보유기관	공동이용 행정정보	종수
15	소방청	▶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4
16	국가보훈처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4
17	국세청	▶ (국세)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8
18	관세청	▶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관세납세증명서	3
19	병무청	▶ 병적증명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시력)	2
20	경찰청	▶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2
21	중소벤처기업부	▶ 메인비즈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4
22	특허청	▶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4
23	대법원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24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 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관련)	9
25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3
26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 개인별월평균보수)	8
27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내역서	1
2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연금법적용대상교직원확인서	1
29	한국가스안전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1
30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공임대주택정보	1
3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1
3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인증서	1
33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증	1
34	금융결제원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
35	한국저작권위원회	▶ 프로그램등록부	1
합계			166

주: 2019년 3월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기관명	기관 수
중앙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기업기업부,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국무조정실, 대통령경호처,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기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헌법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4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243
공공기관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철도공사 ▶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국토정보공사,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아시아문화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공단 ▶ (기타 공공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암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관리공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기업데이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창업진흥원,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국립해양박물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지방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용인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광명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원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98

구분	기관명	기관수
공공기관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부산시설공단, 대구시설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시설공단,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속초시설관리공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천안시설관리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창원시설관리공단, 포항시설관리공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안양시설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시흥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인천시설공단, 포천시시설관리공단 ▶ (특수법인) 금융감독원, 대한상공회의소,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중앙입양원, 16개 시·도 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생명보험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73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소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서울보증보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회원사(26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효성캐피탈, 메리츠캐피탈, KB캐피탈, NH농협캐피탈, 아주캐피탈, 애규온캐피탈, 폭스바겐파이낸셜, 롯데캐피탈, JB우리캐피탈, 산은캐피탈, BNK캐피탈, DGB캐피탈, BMW파이낸셜, 신한캐피탈, 오릭스캐피탈, 하나캐피탈, 한국캐피탈)] 	46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시·도 교육청, 149개 교육지원청 ▶ (대학) 경상대, 공주대, 국민대, 군산대, 단국대, 대구대, 목포해양대, 부산대, 서울대, 안동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비전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해양대, 학교법인승실대학교, 제주대, 상명대, 순천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춘천교육대, 창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한국교통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북대, 서울교대, 강원대, 전남대, 한국방송통신대, 금오공과대, 한국교원대학교 	204
민원처리기준표상 민원사무처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공간정보산업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14
합계		742

주: 2019년 3월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적용기관 및 활용 실적

(단위: 건, 원)

연번	기관명	대상시설	서비스 적용 기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명	활용 실적	사회적 비용 ^{주)} 절감효과
1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2017. 7. 18. ~2019. 4. 14.	장애인등급	5,205	26,920,260
				국가유공자 여부	1,371	7,090,812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686	3,547,992
				한부모가족 여부	1,298	6,713,256
		주차시설	2017. 10. 16. ~2019. 4. 14.	거주지 행정코드	2,260	11,688,720
				전체 자녀 수	2,154	11,140,488
				70세 이상 부모	2,150	11,119,800
				장애인등급	2,171	11,228,412
				국가유공자 여부	2,159	11,166,348
				자동차제원 및 등록지	3,576	18,495,072
모범납세자 여부	2,155	11,145,660				
2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주차시설	2017. 11. 1. ~2019. 4. 14.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96	2,048,112
				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	16	82,752
				장애인등급	2,156	11,150,832
				한부모가족 여부	1	5,172
				차상위 수혜자 여부	9	46,548
				국가유공자 여부	371	1,918,812
				막내자녀 나이	11	56,892
				18세 이하 자녀 수	11	56,892
				70세 이상 부모	5	25,860
				거주지 행정코드	9	46,548
				전체 자녀 수	12	62,064
				자동차제원 및 등록지	1,834	9,485,448
3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장사시설	2017. 11. 1. ~2019. 4. 14.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1,015	5,249,580
				장애인등급	1	5,172
				국가유공자 여부	184	951,648
4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캠핑장	2017. 11. 1. ~2019. 4. 14.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49	1,805,028
				장애인등급	833	4,308,276
				국가유공자 여부	134	693,048
				막내자녀 나이	2,479	12,821,388
				거주지 행정코드	23,123	119,592,156
				전체 자녀 수	3,224	16,674,528
				자동차제원 및 등록지	14	72,408

연번	기관명	대상시설	서비스 적용기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명	활용 실적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5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2017. 11. 1. ~2019. 4. 14.	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	9	46,548
				국가유공자 여부	10	51,720
				막내자녀 나이	4	20,688
				18세 이하 자녀 수	2	10,344
				거주지 행정코드	6	31,032
				전체 자녀 수	9	46,548
6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시설, 체육시설	2017. 12. 13. ~2019. 4. 14.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1	5,172
				장애인등급	135	698,220
				국가유공자 여부	23	118,956
				자동차제원 및 등록지	129	667,188
7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시설, 체육시설	2017. 12. 20. ~2019. 4. 14.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688	3,558,336
				장애인등급	4,977	25,741,044
				국가유공자 여부	4,981	25,761,732
				막내자녀 나이	22	113,784
				거주지 행정코드	384	1,986,048
				전체 자녀 수	47	243,084
				자동차제원 및 등록지	4,383	22,668,876
8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체육 문화센터	2018. 7. 1. ~2019. 4. 14.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187	967,164
				장애인등급	2,454	12,692,088
				국가유공자 여부	1,031	5,332,332
				막내자녀 나이	1,170	6,051,240
				18세 이하 자녀 수	777	4,018,644
				65세 이상 부모	24,933	128,953,476
				전체 자녀 수	1,958	10,126,776
9	국가평생교육원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2018. 6. 29. ~2019. 4. 14.	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	10,489	54,249,108
				차상위 수혜자 여부	7,580	39,203,760
				한부모가족 여부	1,634	8,451,048
1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주차시설	2018. 10. 22. ~2019. 4. 14.	국가유공자 차량 여부	2,060	10,654,320
				저공해 차량 여부	148,509	768,088,548
				경차 여부	39,010	201,759,720
				장애인 차량 여부	11,861	61,345,092
				전체 자녀 수	890	4,603,080
1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2018. 11. 16. ~2019. 4. 14.	국가유공자 차량 여부	16,347	84,546,684
				장애인 차량 여부	15,789	81,660,708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1,581	8,176,932
				한부모가족 여부	2,289	11,838,708

연번	기관명	대상시설	서비스 적용 기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명	활용 실적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12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2018. 11. 9. ~2019. 4. 14.	기초생활수급자(통합)	45,509	235,372,548
				차상위 수혜자 여부	8,433	43,615,476
				한부모가족 여부	510	2,637,720
13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2018. 12. 13. ~2019. 4. 14.	국가유공자 여부	873	4,515,156
				거주지 행정코드	2,567	13,276,524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264	1,365,408
				장애인등급	2,303	11,911,116
				한부모가족 여부	252	1,303,344
				전체 자녀 수+생년월일	4,197	21,706,884
14	한국공항공사	주차시설	2019. 3. 6. ~2019. 4. 14.	국가유공자 차량 여부	1,188	6,144,336
				저공해 차량 여부	56,251	290,930,172
				경차 여부	34,954	180,782,088
				장애인 차량 여부	7,762	40,145,064
				전체 자녀 수	13	67,236
15	대구시설공단	체육시설	2019. 1. 2. ~2019. 4. 14.	국가유공자 여부	58	299,976
				전체 자녀 수	6	31,032
				차상위 수혜자 여부	37	191,364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50	258,600
				장애인등급	30	155,160
				전체 자녀 수 + 생년월일	81	418,932
16	부천시 (시범운영)	주차시설	2019. 2. 21. ~2019. 4. 3. (40일)	경차 여부	14,399	74,471,628
				저공해 차량 여부	6,531	33,778,332
				장애인 차량 여부	7,778	40,227,816
				국가유공자 차량 여부	782	4,044,504
17	진주시	면접정장 대여사업	2019. 4. 22. ~2019. 4. 30.	거주지 행정코드	134	693,048
18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감면	2018. 4. 1. ~2019. 4. 14.	장애인등급	525	2,715,300
합계					563,218	2,912,963,496

주: 5,172원[구비서류 1건당 발급 평균비용(미래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BPR/ISP) 완료보고서, 행정안전부)]×563,218건(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활용 건수)으로 산정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데이터의 공유 및 개방 미흡

소 관 기 관 환경부

조 치 기 관 환경부

내 용

1. 업무 개요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4 등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2008년부터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주요 다중이용시설³⁴⁾에 설치된 실내공기질 측정기의 실시간 측정결과를 통합·수집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대국민 개방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자료공개시스템³⁵⁾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표 1]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및 자료공개시스템 구축 내역

(단위: 억 원)

사업연도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계약금액
2008년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관제시스템 보완 구축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측정망 확대에 따른 관제화면 및 기능개선 - 실시간 수신자료 조회, 측정자료 수신율 등 기능 보완	2.37
2012년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관제시스템 고도화	- 다중이용시설 등 실태조사 자료관리 기능 구축 - 기존 시스템의 통계 및 보고서 기능 강화	2.16
2014년	실내공기질 측정망 연계 및 자료공개서비스 구현 (실내공기질 자료공개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단체 실내공기질 측정망 연계 통합망 구축	1.25
계			5.78

자료: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 환경부는 [표 2]와 같이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34)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이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철 역사, 지하도 상가, 어린이집 등 총 25개 시설군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으로 지정함

35) 실내공기질 자료공개서비스(info.inair.or.kr)

설치한 측정기 72개(34곳),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설치한 측정기(이하 “지자체 측정기”라 한다) 100개(39곳)의 실시간 측정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실내공기질 자료공개시스템을 통해 직접 설치한 측정기 36개(14곳), 지자체 측정기 100개(39곳)의 실시간 측정결과를 개방하고 있다.

[표 2]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및 자료공개시스템의 측정기 자료 관리 내역

(단위: 개, 곳)

시스템명	환경부 측정기 수 ^{주)} (설치 장소 수)	지자체 측정기 수 (설치 장소 수)	계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72 (34)	100 (39)	172 (73)
실내공기질 자료공개시스템	36 (14)	100 (39)	136 (53)

주: 민간시설에 설치된 측정기와 실내공기질 상태를 비교하기 위한 외기 측정기를 제외한 모든 측정자료를 공개 중
자료: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³⁶⁾를 의미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에 대해 적정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사유³⁷⁾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개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국민이 실내공기의 오염도와 유해성을 정확하고 폭넓게 인지

36) ① 「전자정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②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성한 정보,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

37)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② 「저작권법」 및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

·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³⁸⁾를 최대한 수집·공유하여 이를 실내공기질 자료공개시스템을 통해 개방하는 한편, 정확한 실내공기질 정보의 전달(개방)을 위하여 수집·공유되고 있는 실내공기질 정보의 오류 등을 검증·개선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4. 15.~5. 3.)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이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 측정기의 설치 및 측정결과의 공유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표 3]과 같이 서울특별시 84개, 부산광역시 10개 등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측정결과를 수집·공유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 측정기가 총 190개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현행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관리되고 있는 지자체 측정기 100개의 190%에 해당된다.

[표 3] 지자체의 지하철 역사 등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미수집 현황

(단위: 개, 곳)

지역 구분	설치·관리 기관명	측정기 수	설치 장소 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84	2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10	7
인천광역시	인천교통공사	34	34
	인천국제공항공사	30	6
대전광역시	대전철도교통공사	2	2
대구광역시	대구시설공단	3	1
	대구도시철도공사	24	2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3	3
계		190	98

자료: 지역별 교통공사 등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각 지자체 측정기 정보의 수집·공유가 미흡한 사유는 환경부가 2014년 “실내공기질 측정망 연계 및 자료공개서비스 구현” 사업³⁹⁾을 수행한 이후

38) 개별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자료공개시스템 없이 지하철 역사 내 모니터 등을 통해 실시간 공개

39) 사업을 완료한 2015년 6월까지 서울특별시[16개(14곳)] 등 지자체 측정기 총 84개(35곳)를 실내공기질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함[나머지 16개(4곳) 측정기는 사업완료 이후 유지보수 기간 중에 연계]

2019년 4월 현재까지 [별표] “환경부가 직접 설치·연계한 측정기 현황”과 같이 환경부가 직접 설치한 14개 측정기만 추가 연계하여 측정결과를 수집하고, 지자체 산하 지방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규 측정기의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아 위 사업 외에 추가로 연계한 지자체 측정기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감사기간 중 현행 실내공기질 자료공개시스템에서 개방하고 있는 측정결과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된 지자체 측정기 (PM₁₀) 39개⁴⁰⁾를 대상으로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동안 측정결과 정보의 수신 여부, 오류율 등 지자체 측정기 데이터의 정확성을 점검한 결과, 위 시스템의 ‘수신현황관리’⁴¹⁾ 기능 등의 오류로 인해 [표 4]와 같이 서울특별시⁴²⁾ 4개, 광주광역시⁴³⁾ 4개 등 계 8개의 지자체 측정기 정보는 오류율이 약 10~48%에 달하여 해당 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지자체 측정기의 연계정보 수신 여부 및 오류율 등 점검 내역

(단위: 회, %)

담당 기관	지점명	기준 측정횟수 ^{주)} (A)	오류값 횟수(PM ₁₀ 미세먼지 기준)			오류율 (B/A×100)
			미수신 횟수	수신값오류(공백)	계(B)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역(대합실)	8,760	3,983	5	3,988	45.53
	●●역(대합실)	8,760	3,984	-	3,984	45.48
	●●역(대합실)	8,760	4,247	1	4,248	48.49
	●●역(대합실)	8,760	4,034	2	4,036	46.07
광주광역시 (광주도시철도공사)	▲▲역(대합실)	8,760	827	11	838	9.57
	●●역(대합실)	8,760	2971	26	2,997	34.21
	●●역(대합실)	8,760	1444	22	1,466	16.74
	●●역(대합실)	8,760	1681	17	1,698	19.38

주: 실시간 측정기의 경우 직전 1시간 측정결과와 평균값을 표시하므로, 8,760번[24회(1일)×365일]이 정상적인 측정횟수임
 자료: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40) 현재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 중인 지자체 측정기 100개 중 PM₁₀ 측정기 39개의 측정결과를 전수 점검함
 41) 연계되어 있는 실내공기질 측정기의 정보수신 현황을 나타내는 기능으로 정상수신 여부와 오류 유무를 표시함
 42) 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 측정기의 경우 시스템 간 연계방식이 아닌 임시방편 성격으로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읽어오는 방식으로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 홈페이지에 수정 등이 발생할 경우 수신 오류 발생
 43) 수신현황관리 기능 오류로 인해 측정기의 정보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더라도 오류로 표시되지 않아 수신 오류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장애조치 지연으로 미수신 등 오류 발생

그 결과 국민의 건강 및 생활과 밀접한 지하철 역사 등의 실내공기질 관련 정보가 제대로 개방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상태로 전달되고, 수집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통계, 연구 및 정책의사결정 등에 활용하겠다는 당초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목적⁴⁴⁾ 또한 달성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환경부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현재 연계 누락된 측정망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조사한 후 순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통신규격’을 마련하여 데이터 미수신 문제를 해소하는 등 오류율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환경부장관**은 정확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국민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자료공개시스템의 수집·공유 대상에서 누락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내공기질 측정기 190개에서 측정된 정보를 수집·공유하여 개방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수집·공유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기능 등 시스템을 개선·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44)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관제시스템 보완구축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구축·운영을 통해 ① 다중이용시설 시설군별 실내공기 오염원인을 파악·분석하고, ② 신뢰성 있는 정책 기초자료 확보, ③ 과학적인 실내공기 오염도 저감방안 마련 등을 사업 목적으로 명시함

[별표]

환경부가 직접 설치·연계한 측정기 현황

(단위: 개)

설치연도	시설군	측정지점	측정기 수	측정기별 측정 항목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17개 시설	34	72	29	22	5	16
2006년	지하역사 (♀♀역)	외기	2	○			○
		대합실	3	○	○		○
		승강장	3	○	○		○
		터널	1	○			
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	외기	3	○		○	○	
	상가 내	4	○	○	○	○	
2007년	지하역사 (J J역)	외기	3	○	○		○
		승강장	3	○	○		○
	공항시설 (b b 공항)	외기	2	○			○
		대합실	3	○	○		○
여객자동차터미널 (***터미널)	외기	3	○		○	○	
	대합실	4	○	○	○	○	
2008년	도서관 (**학습관)	환풍구	1		○		
		열람실	1		○		
		자료실	1		○		
	항만시설 (△△터미널)	외기	1	○			
대합실		2	○	○			
2009년	박물관 (☆☆관)	외기	1	○			
		시설 내	2	○	○		
	철도역사 (□□역)	외기	2	○			○
대합실		3	○	○		○	
2010년	실내주차장 (△△점)	주차장	4	○	○	○	○
2014년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기	1	○			
		시설 내	2	○	○		
	대규모점포 (●●점)	외기	1	○			
판매장		2	○	○			
2015년	의료기관 (◆◆병원)	외기	1	○			
		대기실	2	○	○		
	노인요양시설 (★★병원)	외기	1	○			
		대기실	2	○	○		
도서관 (㉸㉸도서관)	외기	1		○			
	열람실	1		○			
2017년	지하역사 (◎◎역)	대합실	3	○	○		○
	지하역사 (♂♂역)	대합실	3	○	○		○

자료: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

감 사 원

통 통 보

제 목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행정안전부 ② 신용보증기금 등 [별표] 기재 4개 기관
조 치 기 관	① 행정안전부 ② 신용보증기금 등 [별표] 기재 4개 기관
내 용	

1. 업무 개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8조 등에 따라 민원 신청 시 담당 공무원 등이 구비서류를 대신 확인·처리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기관별 업무 담당자 등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대한 열람·조회 권한을 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 접근권한을 총괄·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안부 예규 제6호)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각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은 기관 전체를 총괄하는 공동이용관리자와 단위 업무별 분임공동이용관리자(이하 “공동이용관리자 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각 업무 담당자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개편, 인사이동, 사무분장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열람·조회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 담당자 등은 접근권한을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한편,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열람·조회 권한 부여는 접근권한이 한 번 부여되면 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권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⁴⁵⁾에는 조직개편, 인사이동 등 내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조회 권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반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조직도 및 업무별 담당자 정보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⁴⁶⁾ 각 기관의 공동이용담당자 등이 인사이동 내역 등을 일일이 확인하여 열람·조회 권한을 수동으로 변경(폐기)하여야 하는 등 접근권한 변경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각 공공기관 등은 인사이동 변경 내역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조회 권한에 즉시 반영하는 등 접근권한 변경 대상자를 철저히 점검·확인하여야 하고, 행안부는 공공기관과 같이 조직도 및 업무별 담당자 정보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최초 권한 부여 시 일정기간 동안만 권한이 유지되도록 하고, 별도의 권한 연장 등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권한이 폐기되도록 하는 등 접근권한 변경(폐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의 권한 부여 및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그런데 행안부는 2019년 4월 현재까지 공공기관과 같이 조직도 및 업무별 담당자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접근권한의 변경(폐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9. 4. 15.~5. 3.) 중 2016. 1. 1. 이전⁴⁷⁾에

45) 조직도 및 업무별 담당자 정보(인사·조직 시스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음

46)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 중 공공기관은 총 171개로 조직도 및 업무별 담당자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171개 공공기관의 인사·조직 시스템을 모두 연계하여야 함

권한이 부여된 31개 공공기관 직원 2,231명을 대상으로 인사이동 내역 및 개인별 사무분장 등과 대사하는 방식으로 접근권한 부여 및 열람·조회 이력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표]와 [별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관리 부적정 내역”과 같이 신용보증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4개 공공기관 계 79명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부서로 인사이동하였거나 휴직·퇴직하였는데도 2019. 3. 7. 현재까지 유효한 열람·조회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중 8명의 접근권한으로는 실제 열람·조회 이력⁴⁸⁾이 확인되는 등 인사이동 변경 내역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관리 및 열람·조회 부적정 내역

(단위: 명)

기관명	접근권한 미폐기	비정상 열람·조회	열람·조회 대상 행정정보	주요 사례
신용보증기금	33	1	주민등록 등·초본 장애인 증명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인턴 직원이었던 A는 2015. 12. 31. 퇴직하였으나, 2019. 3. 7.까지 권한 미폐기, A의 접근권한으로 2016. 6. 3. 1건 열람·조회
한국토지주택공사	24	2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사항명세(토지, 법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토지보상 담당자였던 B는 2017. 1. 31.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 3. 7.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B의 접근권한으로 2019. 2. 26.까지 3건 열람·조회
한국전력공사	20	5	주민등록 등·초본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복지할인 업무 담당자였던 C는 2017. 1. 18.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 3. 7.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C의 접근권한으로 2019. 2. 15.까지 887건 열람·조회
한국주택금융공사	2	-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보급자리론 업무 담당자 D는 2018. 8. 21.부터 휴직 중이나, 2019. 3. 7.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합계	79	8	-	-

자료: 신용보증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47) 통상적으로 2~3년 이내에 1회 이상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점을 반영하여 2016. 1. 1. 이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이 부여된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점검

48)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전임 업무담당자의 공인인증서를 후임 업무담당자가 공유하여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공인인증서 소유자와 열람·조회한 PC만 확인 가능하여 정확히 누가 열람·조회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그 결과, 일부 공공기관 공동이용관리자 등의 부실한 접근권한 관리와 현행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의 권한 부여 및 관리 방식으로 인해 주민등록 등·초본,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개인정보가 비인가자에 의해 임의로 조회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행안부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조직도 및 업무별 담당자 정보가 연계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 대해 최초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부여 시 일정기간 동안만 권한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해당 내용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에 반영하여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용보증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향후 인사이동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에 반영하는 등 권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이동 내역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최초 열람·조회 권한 부여 시 기간제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의 권한 관리기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별표] 기재 4개 기관의 장은 비인가자에 의한 임의

열람·조회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조회 권한관리를 철저히 하고, 권한부여 내역을 전수 점검하여 인사이동 또는 휴·퇴직한 직원 등에 대해서는 권한을 폐기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관리 부적정 내역

(단위: 건)

기관명	성명	미폐기 권한으로 열람·조회한 횟수	상세내역
신용보증기금	-		2014. 6. 30.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4. 6. 30.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4. 6. 30.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4. 12. 31.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4. 12. 31.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5. 10. 22.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6. 1. 29.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7. 9. 30.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5. 10. 29.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7. 8. 31.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7. 1. 31.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5. 6. 30.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6. 12. 30.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5. 6. 30.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5. 6. 30.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5. 6. 30.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5. 6. 30.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6. 1. 25. 인사이동 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A	1	2015. 12. 31. 퇴직하였으나 조회 기록(1건, 2016.6.3.) 존재,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5. 12. 31.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5. 12. 31.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5. 12. 31.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5. 12. 31.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5. 12. 31.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5. 12. 31.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5. 12. 31.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5. 12. 31.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5. 12. 31.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5. 12. 31.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5. 12. 31.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5. 12. 14.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5. 12. 31.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5. 11. 20.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기관명	성명	폐기대상 권한으로 열람·조회한 횟수	상세내역
한국토지 주택공사	-		2017. 1. 31.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토지보상) 미폐기
	-		2015. 2. 3.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토지보상) 미폐기
	-		2017. 2. 20.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토지보상) 미폐기
	-		2019. 1. 31.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토지보상) 미폐기
	-		2019. 1. 31.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토지보상) 미폐기
	-		2018. 1. 25.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토지보상) 미폐기
	B	3	2017. 1. 31.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 2 .26.까지 조회기록(3건) 존재,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토지보상) 미폐기
	-		2017. 1. 31.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토지보상) 미폐기
	-		2018. 1. 25.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토지보상) 미폐기
	-		2017. 12. 21.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토지보상) 미폐기
	-		2018. 1. 25.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토지보상) 미폐기
	-		2017. 1. 31.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토지보상) 미폐기
	-	348	2019. 1. 31.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 2. 28.까지 조회기록(348건) 존재,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토지보상) 미폐기
	-		2018. 1. 25.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토지보상) 미폐기
	-		2019. 1. 31.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토지보상) 미폐기
	-		2018. 7. 26.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토지보상) 미폐기
	-		2017. 10. 16.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토지보상) 미폐기
	-		2018. 1. 25.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토지보상) 미폐기
	-		2018. 1. 25.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토지보상) 미폐기
	-		2017. 1. 31.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토지보상) 미폐기
	-		2018. 1. 25.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토지보상) 미폐기
	-		2017. 12. 31.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실제입주자거주여부) 미폐기
	-		2018. 12. 31. 퇴직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실제입주자거주여부) 미폐기
-		2018.9.14. 휴직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국민임대공급) 미폐기	
한국전력공사	-	3	2018. 4. 16. 팀내 업무분장이 변경되었으나 2018. 7. 31.까지 조회기록(3건) 존재, 2019년 3월 현재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	123	2018. 2. 19. 인사이동하였으나(요금관리팀) 2018. 9. 29.까지 조회기록(복지할인 신청접수 권한, 123건) 존재, 2019년 3월 현재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	577	2018. 2. 19. 인사이동하였으나 2018. 10. 18.까지 조회기록(복지할인 신청접수 권한, 577건) 존재, 2019년 3월 현재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	203	2019. 1. 14.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 2. 14.까지 조회기록(203건) 존재, 2019년 3월 현재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기관명	성명	미폐기 권한으로 열람·조회한 횟수	상세내역
한국전력공사	C	887	2017. 1. 18.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 2. 15.까지 조회기록(887건) 존재, 2019년 3월 현재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		2018. 7. 6.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		2019. 1. 14. 인사이동(기획관리실)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		2019. 1. 31. 업무분장이 변경되었으나 2019년 3월 현재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		2018년 9월 퇴직예정자 교육에 입소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 접근권한 미폐기
	-		2019. 1. 31.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		2019. 2. 19.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		2019. 1. 14.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		2018. 2. 19.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		2019. 1. 14.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		2019. 2. 18.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		2019. 2. 18.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		2019. 2. 18.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		2019. 2. 18.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		2019. 2. 18.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한국주택 금융공사	-		2018. 2. 12. 인사이동하였으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D		2018. 8. 21.부터 계속 휴직 중이나 2019년 3월까지 접근권한 미폐기

자료: 신용보증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 재구성